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 19743호, 2024. 1. 25. 시행)에 따라, 특정중대범죄를 범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및 집행 절차 관련 규정과 서식을 마련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18호, 2024. 1. 12. 시행) 개정으로 스톱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대검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1. 29. ~ 2024. 1. 8.)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편의 제목 “보칙”을 “신상정보 공개”로 한다.

제318조 및 제319조를 각각 제320조 및 제321조로 하고, 제318조 및 제3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8조(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① 검사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4호서식의 신상정보공개결정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보공개대상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제319조(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 ① 검사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5호서식의 피고인 신상정보공개청구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공개청구사건처리부를 작성하고, 신상정보공개청구사건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석청구사건 인원표”는 “신상정보공개청구사건처리부”로 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하거나 그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신상정보공개청구사건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제320조 앞에 편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편 보칙

제321조(종전의 제319조) 제1항에 제143호 및 제14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3. 제318조제2항의 신상정보공개대상자명부

144. 제319조제3항의 신상정보공개청구사건처리부

별지 제157호의9서식부터 별지 제157호의11서식까지 및 별지 제157호의13서식부터 별지 제157호의1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4호서식 및 별지 제38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 1. 12.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8조, 제319조, 별지 제384호서식 및 별지 제38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 1. 25.부터 시행한다.

○○○검찰청

(000-0000-0000)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잠정 조치 청구(사법경찰관 신청)

검 사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잠정조치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아래와 같이 잠정조치를 청구합니다.

[]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행위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호인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성명	주거
	직장	
범죄사실 및 잠정조치가 필요한 이유	별지 신청서의 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판사 인	

210mm×297mm[백상지(80g/㎡)]

○○○검찰청

(000-0000-0000)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잠정조치 취소청구(사법경찰관 신청)

검 사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잠정조치의 취소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아래와 같이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행위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호인	
잠정조치 결정서번호	
잠정조치종류	☐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잠정조치기간	
잠정조치의 취소가 필요한 이유	별지 신청서의 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판사 인

○○○검찰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잠정조치신청 기각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잠정조치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잠정조치신청을 기각합니다.

- []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 []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행위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호인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성명	주거
	직장	
범죄사실 및 잠정조치가 필요한 이유	별지 신청서의 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검찰청		
검 사		인

○○○검찰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잠정조치 기간연장 등 신청 기각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잠정조치의 기간연장[]·종류변경[]·취소[] 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합니다.

행 위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 호 인	
잠 정 조 치 결 정 서 번 호	
잠 정 조 치 종 류	☐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잠 정 조 치 기 간	
잠정조치의 기간연장 등이 필요한 이유	별지 신청서의 내용과 같음
기 각 하 는 취 지 및 이 유	
○○○ 검찰청	
검 사 인	

○○○검찰청

(000-0000-0000)

잠 호

형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잠정조치청구(직권)

검 사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잠정조치를 청구합니다.

[]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행 위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 호 인		
피 해 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성명	주거
	직장	
범죄사실 및 잠정조치가 필요한 이유		
기 각 하 는 취 지 및 이 유	판사	인

○○○검찰청

(000-0000-0000)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잠정조치 기간연장 등 청구(직권)

검 사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잠정조치의 기간연장[]·종류변경[]을
청구합니다.

행 위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 호 인			
잠 정 조 치 결 정 서 번 호			
잠정조치 종류	☐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 으로 생활하는 장소로 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변 경 할 잠정조치 종류	☐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 으로 생활하는 장소로 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잠정조치 기간		연장 또는 변경할 잠정조치 기간	
잠정조치의 기간 연장·종류변경이 필요한 이유			
기 각 하 는 취지 및 이유	판사 ㉠		

○○○검찰청

(000-0000-0000)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잠정조치 취소청구(직권)

검 사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행 위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 호 인		
잠 정 조 치 결 정 서 번 호		
잠 정 조 치 종 류	☐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잠 정 조 치 기 간		
잠 정 조 치 의 취소가 필요한 이유		
기 각 하 는 취 지 및 이 유	판사	인

210mm×297mm[백상지(80 g / m²)]

신상정보공개결정서			검 사 장
피의자	성 명		차 장 검 사
	주 민 등 록 번 호		
	나 이		부 장 검 사
	주 거		
	등 록 기 준 지		주 임 검 사
죄 명			
형 제 번 호			
결 정 일 자		년 월 일	
공 개 예 정 일		년 월 일	
결 정 이 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함 검찰청 검사 인			

○ ○ ○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청구

아래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피 고 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사 건	재판부
	사건번호
	죄명
범죄사실 및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한 이유	
기 각 하 는 취 지 및 이 유	판사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3편 보칙</u> <u><신 설></u> <u><신 설></u>	<u>제13편 신상정보 공개</u> <u>제318조(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u> ① 검사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4호서식의 신상정보공개결정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보공개대상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u>제319조(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u> ① 검사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5호서식의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청구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공

개청구사건처리부를 작성하고, 신상정보공개청구사건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석청구사건인원표”는 “신상정보공개청구사건처리부”로 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하거나 그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신상정보공개청구사건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제14편 보칙

제320조 (현행 제318조와 같음)

제321조 (별표와 서식 등) ① -----
-----.

1. ~ 142. (현행과 같음)

143. 제318조제2항의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명부

144. 제319조제3항의 신상정보

<신 설>

제318조 (생 략)

제319조 (별표와 서식 등) ①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대검찰청예규로 정한다.

1. ~ 142. (생 략)

<신 설>

<신 설>

② · ③ (생략)	<u>공개청구사건처리부</u> ② · ③ (현행과 같음)
------------	---